

신 《회사법》에 따른 세무사항 고찰

2024.01

Issue 5

개요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신 《회사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신 《회사법》은 자본제도, 회사 지배구조,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의무 및 절차 간소화 등 영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개정을 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회사법》이 1993년 처음 공포된 이후 가장 포괄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wC [2024 News flash Issue 2](#)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개정 주요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신 《회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납세자는 개정 조항에 따른 세무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News flash에서는 세무 관점에서 신 《회사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변화 1: 기업 출자액 납입 규정 개정

1.1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세전 공제 제한

신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주주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법》의 규정과 다릅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등록자본 인납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사가 납부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회사 주주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회사법》 인납제도가 기한부 실납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함[2009]312호 문건 규정에 따르면, 기업 투자자가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외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자본금과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정 기한 내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아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기업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규정이 공포된 것입니다. 기존 《회사법》에 따르면 실납 기한이 투자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 기업 투자자가 충분히 긴 실납 기한을 설정하여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상기 문건의 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한 제약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자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이 완납되지 않은 것은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회사 정관에서 5년보다 더 짧은 실납 기한이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한 실납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출자액 납입과 차입금의 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소득세 정산납부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이자비용에 대해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1.2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사 주주의 출자액 조기 납입

신 《회사법》은 실납 의무 만기 가속화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회사가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 도래 채권의 채권자는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액의 조기 납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이 채권자 신분으로서 세금 체납 기업의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액의 조기 납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법》은 납부 명령, 연체료 및 과태료 부과, 은행에게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전제는 납세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납세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신 《회사법》이 규정한 실납 의무 만기 가속화 조항은 세무당국에 더 많은 세금 추징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1.3 미납 지분 양도의 세무 영향

신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기한대로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대로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가 지정 일자에 따라 출자액을 납입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기 규정은 양도인이 지분 양도 거래 후 부담해야 할 출자액 책임 비용의 세전 공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도인이 상기 보충 또는 연대 책임으로 인해 이미 양도한 지분에 대해 남은 미납 출자분을 납입한 경우, 해당 출자액을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로 보아 세전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분 양도 원가의 일부로 보아 지분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주주가 미납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보충 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 2: 기업 감자 규정의 추가 및 세부화

신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 감소가 전체 주주의 균등감자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등감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2.1 미납 출자분 감자의 세무 영향

기업이 미납 출자분에 대해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실제 감자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금 감소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기납 출자분 감자의 세무 처리

기업이 이미 납입한 출자액을 감자하는 경우, 기업 주주와 개인 주주는 각각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한 기업 주주의 세무 처리는 주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34 호 문건을 참고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이익과 누적 이익준비금 중 자본 감소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한 개인 주주의 세무 처리는 주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41 호 문건을 참고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개인 주주가 피투자기업 자본금 감소로 취득한 소득은 재산양도소득에 따라 세무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 주주의 소득세 처리와 달리 개인 주주 감자는 “단계별” 세무처리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회수액, 배당금분배 및 재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4]67 호 문건 “지분양도수입이 명확히 낮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경우(예: 신고한 지분양도수입이 보유지분 해당 순자산분보다 낮음), 관할 세무당국은 지분양도수입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균등감자와 차등감자의 계획에 따라 상이한 세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균등감자가 간단하고 감자 전후의 주주 지분율이 유지되며 관련 세무 위험이 비교적 적습니다. 자본금만 감소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투자 비용에 대한 단순 회수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등감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주주의 자본금이 유지되어 감자 이후 지분율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업의 차등감자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주주 사이에 감자 금액과 감자 후 지분율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상황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는 적합한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과 소통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3: 관계회사의 연대 책임

기존 《회사법》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회사법》은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각 회사는 그 임의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실무상 일부 주주가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함으로써 사업과 자산을 이전하여 “금선탈호(金蝉脱壳, 나방이 애벌레로부터 나올 때 몸뚱아리만 껍질에서 쏙 빠져나옴)”의 기술로 과세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법》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수직적인 지분구조에 대해서만 연대책임(look through)을 규정했습니다. 기존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특성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세무기관이 입증할 수 있더라도 주주의 책임만 물을 수 있으며 그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관계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수평적 위치에 있는 회사 사이에도 연대책임(look through)을 규정하여,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당국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은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서 규정한 “실제로 발생하고 소득 획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은 관계회사가 부담하는 연대 책임으로 인한 세무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화 4: 간이말소절차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간이말소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신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존속기간 동안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전체 주주가 약정한 후 규정에 따라 간이말소 절차를 통해 회사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간이말소 절차를 통해 회사 등기를 말소했으나 주주의 채무 변제 약정이 부실한 경우, 등기 말소 전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간이말소 조항이 회사 말소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말소 절차가 가속화 및 간소화됨에 따라 세무당국이 이미 말소된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회사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추징하는 안건이 더 많은 납세자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주주의 “약정이 부실한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관해서 일정한 논쟁이 있습니다. 주주가 약정한 당시에는 기업 장부상 미납세금이 없었으며 주주와 경영진 모두 과세소득액의 과소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간이말소 이후 세무당국이 기업의 과세소득액에 대한 과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이 주주의 “부실한 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일부 일선 세무기관이 세무 말소를 마친 기업이 존속기간 동안 탈세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기업에 세무 등기를 원복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충분한 법적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신 《회사법》에 의하여 세무당국은 이미 말소한 기업의 주주로부터 기업의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말소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전반적인 세무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적시에 수정함으로써 주주 또는 기업 자체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방지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변화 5: 비화폐성 출자 방식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출자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비화폐성 출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세무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 관점: 재세[2014]116 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 투자를 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과세기초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당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은 5 년으로 나누어 균등하게 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특수세무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재편의 경우 재세[2009]59 호 문건 또는 재세[2014]109 호 문건에 따라 과세이연 혜택의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관점: 재세[2015]41 호 문건에 따르면,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를 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자산의 취득원가 및 합리적인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5 년 동안 이연하여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치세 관점: 재세[2016]36 호 문건에 따르면,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자를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양도에 해당하며 6% 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 출자 방식에 따라 과세 시점 및 세무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 6: 간소화된 회사 합병 규정의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간소화된 회사 합병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사가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 합병 시 지급한 대가가 해당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간소화된 회사 합병 절차가 기업 재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기업 합병이 관련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종 세목별로 세무처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 측면에서는, 재세[2009]59 호 문건에 따라 기업 합병이 특수세무처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이연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치세 측면에서는, 기업 합병을 통한 전체 자산 양도 시 그 관련되는 재화, 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계세(취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와 관련하여 기업 합병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각 세목별 혜택 적용 요건이 상이하므로 기업이 회사 합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세무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핵심 요약

《회사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 사항의 변화는 기업의 사업, 투자 및 재편 등 측면의 세무처리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세금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세금 최적화의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관련 개정 조항을 잘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세무 위험을 고려하고 컴플라이언스 처리를 강화하며 세금 최적화 기회를 모색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세무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5368-4085 suyon.s.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Elaine Chen (86) (21) 2323-8093 elaine.yl.che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2024年1月29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